

 보건복지부		보 도 자 료 10월 22일(화) 국무회의 시작(08:00) 이후 보도	
배 포 일	2019. 10. 21. / (총 5매)	담당부서	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
팀 장	백 경 순	전 화	044-202-3552
담 당 자	이 희 정		044-202-3553

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한다

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(10.22) -

- 2019년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50%까지 가중부과된다.
- 현재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*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'19년 실태조사) 의무 이행률 : ('17년말) 86.7% → ('18년말) 90.1% 【붙임1】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10월 22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-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·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(법률 제16404호, 2019.4.30. 공포, 11.1. 시행 예정)에 따른 것이다.

-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.

□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·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(안 별표 1의3 제1호 신설) 마련

-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

* 최초 1년 이내(2회 부과)는 가중부과 제외, 시행('19.11.1)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 산정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

(현행) 1년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(연 최대 2억 원) ⇒ (개정)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(연 최대 2억 원),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(연 최대 3억 원)

□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“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* 것은 물론,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* '18년말 기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사업장의 평균 부담금액은 2억 400만 원으로 개정 전 이행강제금 최고 부과액(2억 원)과 유사한 수준,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시 최대 3억 원으로 상한이 올라가게 되어 사업장은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

< 붙임 > 1.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
2.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및 후속조치

< 별첨 >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붙임 1

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제도

□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

- (의무 사업장)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(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)
- (이행 판단 기준) ① 직접 설치·운영 ② 위탁보육 실시
 - ① (설치·운영)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,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% 이상 부담
 - ② (위탁보육)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체결, 근로자 자녀의 30% 이상,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% 이상 지원
- (이행 수단)
 - (명단 공표)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미이행사업장 및 조사불응사업장에 대해 명단 공표*
 - * 일간지 게재, 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(매년 5월말)
 - (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)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(2회) 및 이행강제금* 부과
 - * 1년에 2회, 매회 1억 원의 범위 내

□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도 경과

- '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'직장 탁아제' 시행
- '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근거* 규정
 - * (이행방법) 직접 설치, 위탁보육, (의무대상) 상시여성근로자 500명 이상
- '95년 의무사업장 확대 (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)
- '97년 「직장어린이집 확충대책」 수립
 - *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(~03년 24개소 설치, 근로복지공단 위탁)
- '05년 의무사업장 확대* 및 이행방법에 '보육수당' 신설
 - *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

- '12년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근거 규정 신설
- '15년 의무이행 수단 중 보육수당제도 폐지
- '16년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신설

* 제도 도입은 '16.1.1부터이나 실질적 부과는 '17년부터 시작

□ 직장어린이집 현황 ['18년말 기준]

-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현황

(기준단위 : 개소, 명, %)

구 분	시설 수	정원	현원	정원충족률
전체 어린이집	39,171개소	1,732,324명	1,415,742명	81.7%
직장어린이집	1,111개소* (2.8%)	81,425명 (4.7%)	62,631명 (4.4%)	76.9%

* 의무사업장 + 비의무사업장

-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

- (의무 이행률) 86.7% → 90.1% (의무사업장 1,389개소 중 1,252개소 이행)

(단위 : 개소, %)

연도별	의무사업장 (A=B+C)	이행(B)				미이행(C)
		계	설치	위탁	수당	
'18.12.31	1,389	1,252(90.1%)	957	295	-	137(9.9%)
'17.12.31	1,253	1,086(86.7%)	839	247	-	167(13.3%)
'16.12.31	1,153	940(81.5%)	729	211	-	213(18.5%)
'15.12.31	1,143	605(52.9%)	578	27	-	538(47.1%)
'14.12.31	1,204	903(75.0%)	635	93	175	301(25.0%)
'13.12.31	1,074	877(81.7%)	534	101	242	197(18.3%)
'12.09.30	919	683(74.3%)	359	71	253	236(25.7%)

□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

(단위 : 건, 개소, 백만원)

	2017	2018	2019.6	합계
부과회수 (사업장 수)	23(17)	16(10)	8(7)	47(34*)
금액	1,707	1,264	509	3,480

* 중복제외시 22개 사업장

붙임 2

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및 후속조치

주요사항	내 용
법적근거	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(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),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, 제20조의5 ('12.6.29 시행)
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	관계부처 합동(복지부, 고용부, 교육부, 시도) 조사 실시 * (복지부)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, (고용부) 일반 기업, (교육부)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, (시·도) 지방행정기관/ 조사수행 : 육아정책연구소
공표사항	사업장 명칭·주소·상시(여성)근로자 수·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
공표시기 및 방법	매년 5월말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및 2개 이상 일간지 게재
이행기준	①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 ② 위탁 보육 *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
공표대상(기준)	설치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
공표 제외사유	①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중인 경우 ③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명단공표 심의위원회	보건복지부장관 임명(위촉) : 총 8명 - 근로자 대표(1인), 사업주 대표(1인), 법률전문가(1인), 공익대표(2인), 보육전문가(2인), 복지부(1인)
공표절차	①심의 ⇒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⇒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⇒ ④ 공표(제외)대상 사업장 재심의 ⇒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(5.31)
후속 조치	○ (이행명령) 지자체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'상당한 기간'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재차 이행명령 가능(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) ○ (이행강제금)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시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, 매회 1억 원의 범위내에서 부과·징수(동법 제44조의3)